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7580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8.

발 의 자 : 이헌승・이성권・김상훈
김소희・송석준・이종배
박덕흠・김 건・유용원
김선교・서지영・김도읍
김재섭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연계가 미비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8,580억원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이중지급되었으며, 연간 이중수령인원은 18만명에서 27만명으로, 이중수령금액은 1,618억원에서 2,48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.

이에 이러한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방법 및”을 “방법,”으로, “설정”을 “설정 및 제4항에 따른 청구 절차”로 한다.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실손의료보험(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6제1항의 실손의료보험을 말한다)계약에 따라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보험금(이하 “초과보험금”이라 한다)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회사가 초과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그 가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 초과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,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다.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차감된 사실 및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초과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비용의 일부부담) ① ~ ③ (생 략)	제44조(비용의 일부부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실손의료보험(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6제1항의 실손의료보험을 말한다)계약에 따라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보험금(이하 “초과보험금”이라 한다)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회사가 초과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그 가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 초과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,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다.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차감된 사실 및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.
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, 본인부	⑤ ----------

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----------방법,----------설정 및 제4항에 따른 청구 절차----------.